

라. 별점 부과기준 합리화(안 별표 3)

- 1)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별점 부과의 기산일을 정하고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에 대한 별점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2) 명단공표제도의 별점산정 기산일을 명단공표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역산하도록 하고, 별점 경감기준 중 현금결제 우수업체의 경감 기준을 다양화하며,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경감 점수는 축소함.
- 3) 별점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. <법제처 제공>

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이 명 박** 인

2010년 7월 21일

국무총리 정 운 찬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 
맹 형 규  
(금융위원회 소관)

**●대통령령 제22298호**

**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**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연 100분의 49”를 각각 “연 100분의 44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연 100분의 49”를 각각 “연 100분의 44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.

**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대부업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에서 연 100분의 44로 인하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